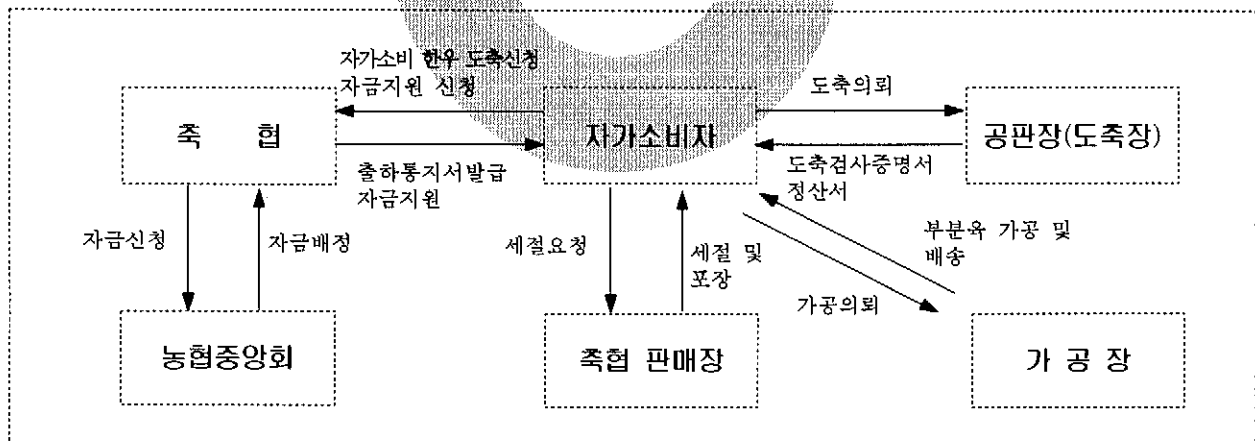


한우 자가소비 지원사업 업무절차 및 방법

1. 주요 사업내용

- ☐ 지원대상 : 한우 공동구매 (최소 5명) 후 자가소비자
- ☐ 지원기간 : '13. 08. 19 ~ 12. 20
- ☐ 지원수량 : 12,000두 (소요예산 48억원)
- ☐ 지원금액
 - 자가소비자 : 최대 388천원(도살해체수수료 · 가공 · 배송비 실비)
 - 축 협 : 12천원/두(증빙서류 확인, 알선 및 정산수수료 등)
- ☐ 지원조건
 -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개체만 지원
 - 도축 · 가공 · 배송 증빙자료가 모두 첨부된 경우에만 지원
 - ※ 단, 가공 후 자가배송 시 배송비는 미 지원
- ☐ 사업체제도



- ☐ 기타사항
 - 도축, 가공을 위한 상하차, 운송비는 개인 부담 (미 지원)
 - 가공 후 축협 판매장 등에서 추가 세절작업 요청 시 약 50만원 (갈비 100천원, 기타부위 1천원/kg당) 수준의 추가비용 발생

2. 업무절차 및 방법

가. 한우 자가소비 공동구매자 모집 및 각출

- ☐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소비자는 최소 공동구매 인원 (5명 이상)을 모집
 - ※ 본인 소 공동구매 후 자가소비 참여도 가능
- ☐ 각출금 및 한우 구매금액 입금 증빙자료 준비
 - 각출금 : 공동구매자 대표 설정 후 대표자 계좌 입금내역
 - 거래금액 : 한우 구매 시 판매자 통장 입금내역

나. 한우 자가소비 신청

- ☐ 신 청 처 : 축협
- ☐ 신청자 준비사항
 - 자가소비용 한우 도축·가공·배송 신청서 (축협에 비치)
 - 소 매매대금 입금내역(통장 거래내역 등) 사본
 - 각출금 입금내역(통장 거래내역 등) 사본
 - ※ 각출금 입금일자가 도축일자 이후인 경우 판매로 간주하여 미 지원
 - 자금지원 시 입금통장(공동구매 대표자 명의) 사본
 - 도축·가공·배송처 연락처 및 비용 확인
 - 자가소비자는 도축, 가공, 배송비를 확인 후 축협에 선 입금 (부가세 신고 등을 위해 축협 단위에서 비용 정산)
 - 본인이 직접 배송할 경우 배송비 입금 제외(단, 배송비 미 지원)

다. 제출서류 검토 및 도축·가공·배송 관련서류 발급(축협)

- ☐ 자가소비용 한우 도축·가공·배송 신청서 작성내용 검토
 - 각출금 및 거래내역 증빙자료
 - 도축·가공·배송처에 연락하여 정산관련 비용 확인
 - 축협(협회) 지정 통장에 도축·가공·배송비 선 입금여부 확인

-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정보조회(<http://cattle.mtrace.go.kr>)를 통하여 이력제 등록사항 확인

- 품종, 사육자 정보, 양수·양도신고 등
- 자가소비자가 농장주일 경우 양수·양도 신고 후 도축의뢰 (단, 자가소비자가 농장주가 아닌 일반 소비자일 경우 양수·양도 신고를 생략하고 전 소유주 명의로 도축 의뢰하되, 정산서 등 관련서류에 자가소비자 성명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)

□ 도축·가공·배송관련 서류 발급

도축장용 서류	가공장용 서류
· 자가소비용 한우 도축·가공·배송 신청서 사본 · 자가소비용 한우 위탁판매 출하(통지·가 접수)서 · 축산물등급판정 제외대상 확인 신청서 (등급판정을 받지 않을 경우 등급판정수수료 및 자조금 면제)	· 자가소비용 한우 도축·가공·배송 신청서 사본

※ 가공장은 소분할 가공 후 배송까지 책임

- 축협(협회)에서는 자가소비용 한우 도축·가공·배송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(자가소비용 한우 도축·가공·배송 신청서, 각출금 및 거래내역 증빙자료, 개체식별번호 조회결과, 자금정산용 자가소비 대표자 통장 사본) 편철 보관

라. 도축·가공·배송의뢰 및 비용정산

- 자가소비자는 본인이 작성한 자가소비용 한우 도축·가공·배송 신청서에 의거 해당 작업장에 작업 요청

※ 도축, 가공장 이동을 위한 상·하차비, 운송비는 개인 부담이며 정부 지원사항은 아님에 유의 (가공 후 배송비와 혼동 주의)

□ 작업장별 관련서류 제출

○ 도축장

- 자가소비용 한우 도축·가공·배송 신청서 사본
- 자가소비용 한우 위탁판매 출하(통지·가 접수)서
- 축산물등급판정 제외대상 확인 신청서

○ 가공장 : 자가소비용 한우 도축·가공·배송 신청서 사본

※ 가공장에서는 소분할 가공 후 배송까지 책임

□ 도축·가공·배송비용 정산

○ 정산은 부가세 신고 등을 위해 축협(협회) 단위에서 실시

- 축협(협회)에서는 부산물 및 지방 판매대금을 감안하여 정산 후 차액 발생 시 신청자 통장에 입금

※ 축협(협회)에서는 정산 후 도축·가공·배송 관련 증빙자료 (도축·가공·정산서, 배송지 송장 및 영수증 등)를 자가소비 신청자가 기 제출한 서류와 함께 편철 보관

마. 부분육 세절작업

- 자가소비자는 소분할 부분육의 세절작업을 위해 축협 판매장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, 약 50만원 수준의 추가 비용 발생
(세절비 : 갈비 100천원, 기타부위 1천원/kg 수준)

바. 자금지원 신청

- 축협에서는 매월말(도축일자 기준) 실적을 기준으로 익월 상순까지 지역본부를 경유하여 우리부로 제출 (단, 8.19 ~ 8.31 도축분은 9월 도축분과 함께 10월 상순까지 신청하고, 11월분 도축분은 12. 20 도축분과 함께 12. 24까지 신청)

○ 지원금액 : 최대 388천원/두 (실비 지원)

- 도축비 : 도살해체 수수료 실비 (검사비 제외)
- 가공비 : 부분육 소분할 가공비 실비
- 배송비 : 부분육 가공 후 배송비 실비

※ 기타 부산물 작업비, 도축, 가공장 이동관련 상하차비, 운송비 등은 본인 부담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

○ 사전 검토사항

- 비용 등 각종 증빙서류의 적정여부
-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정보조회(<http://cattle.mtrace.go.kr>) 결과 도축가공정보란에 "육질등급 미 표시", "도축·가공장명" 일치 여부 등

○ 정산 관련자료 제출

- 자가소비용 한우 도축·가공·배송실적 보고서 1부
- 개인별 자가소비용 한우 도축·가공·배송 신청서 사본 1부
- 도축·가공 정산서 사본
- 배송지 송장 및 영수증 사본 각 1부(본인 직접 배송 시 제외)
- 쇠고기 이력제 개체식별번호 조회 결과 1부
- 자금 입금용 축협 법인통장 사본 1부

사. 자금배정 및 정산

□ 우리부에서는 자료 검토 후 조합별로 해당자금 전금

○ 자가소비자 : 388천원/두

○ 축협 : 12천원/두

□ 축협에서는 자금 수령 후 5영업일 이내에 신청자별로 입금처리

아. 기타사항

□ 도축·가공·배송비는 부가세 신고 등을 위해 축협에서 선금금을 받아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나, 자가소비자가 직접 정산을 주장할 경우 도축, 가공, 배송처와 협의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직접 처리토록 예외적으로 허용